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기술사업화 직접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기술사업화 직접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지역 바이오 및 전후방** 중견·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기술사업화 직접지원프로그램
- 추진목적 :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혁신 기술기업 육성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7. 8.(화), 18:00까지
- 지원기간 : 2025. 8. 1. ~ 2025. 10. 31. (3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1개사 당 최대 1,5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① 전북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면서 ② '25년 1~10월 내 전북 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인 **바이오 및 전후방 기업** *①+② 모두 해당 필수

※ 해당 기간(2025.01.01.~2025.10.31.) 이내 기술이전, 노하우(기술자문) 이전 중개 계약서 등 기술이전 중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전북테크노파크의 중개가 확인되어야 함.)

※ 지역 내 소재 여부 : 기업의 본사, 사업장(공장, 지점 포함),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전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소재한 것으로 판단함.

※ 바이오 및 전후방 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음료, 농생명/천연물유래 소재,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원료,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팜, 농업용 기계/시스템, 식물공장, 의료기기 적용 탄소소재 등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2. 지원 내용

□ 지원유형별 필수품목(필수)+자율품목(선택) 1,500만원 이내 패키지 지원

기술사업화 직접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전북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면서 '25년 1월~10월 내 전북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인 바이오 및 전후방 기업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1개사 당 최대 1,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 필수, VAT 기업 별도 부담						
사업기간	2025. 8. 1. ~ 2025. 10. 31.(3개월)						
지원유형	<table border="1"> <tr> <th>☑기술개발형</th> <th>☑상용화지원형</th> </tr> <tr> <td>이전받은 기술의 추가 R&D를 위한 기획지원</td> <td>이전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td> </tr> <tr> <td>*R&D 기획</td> <td>*시제품 제작</td> </tr> </table>	☑기술개발형	☑상용화지원형	이전받은 기술의 추가 R&D를 위한 기획지원	이전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R&D 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형	☑상용화지원형						
이전받은 기술의 추가 R&D를 위한 기획지원	이전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R&D 기획	*시제품 제작						
필수 지정품목							
품목별 세부 지원내용							
품목명	지원내용						
R&D 기획 (공급기업(관) 필수)	-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지원 - BM 수립, R&D 특허전략지원, IP-R&D 등 전문업체 활용비 * 공급기관 : 경영컨설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유사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필수 명기						
*시제품 제작 (공급기업(관) 필수)	-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전문업체 활용비 (금형 제작/공정개선 제외)						
기술가치평가	- 정부 공인 평가기관을 통한 기술가치평가 * 공고문 8페이지 리스트 참조 - 기술이전 계약 전,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지원 - 특허 분석, 기술성 분석, 기술가치 산정 등 기술이전 협상 활용						
마케팅 (공급기업(관) 필수)	- 기술(제품) 소개 홍보물 제작(카탈로그/영상 등)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 홈페이지(국/영문)제작, 제품 BI·CI 제작지원 등 - 제품·포장 디자인 등						
컨설팅 (공급기업(관) 필수)	- 국내외 시장/기술조사, 재무·경영진단, ESG 전략 수립, 투자유치 컨설팅 등 - 해외 특허 취득, 현지 법률 컨설팅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비 -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비 등						
시험분석·인증	- 국가공인기관·연구소 및 대학을 활용한 시험분석비 - 시험분석, 인허가, 독성실험, 효능평가, 비임상실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 - 국내외 제품 인증획득 지원 * 단, 사업 협약기간 내 완료하여 결과물 제출 가능 건에 대해서 신청						
해외특허지원	- PCT 등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비용						

* 필수품목 외 자율품목은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 위 내용 이외의 신청 품목은 선정평가에서 지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단, 기술이전료 지원은 불가)

3. 평가기준 및 방법

- 1차 서류점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 대상 기업은 서류검토 후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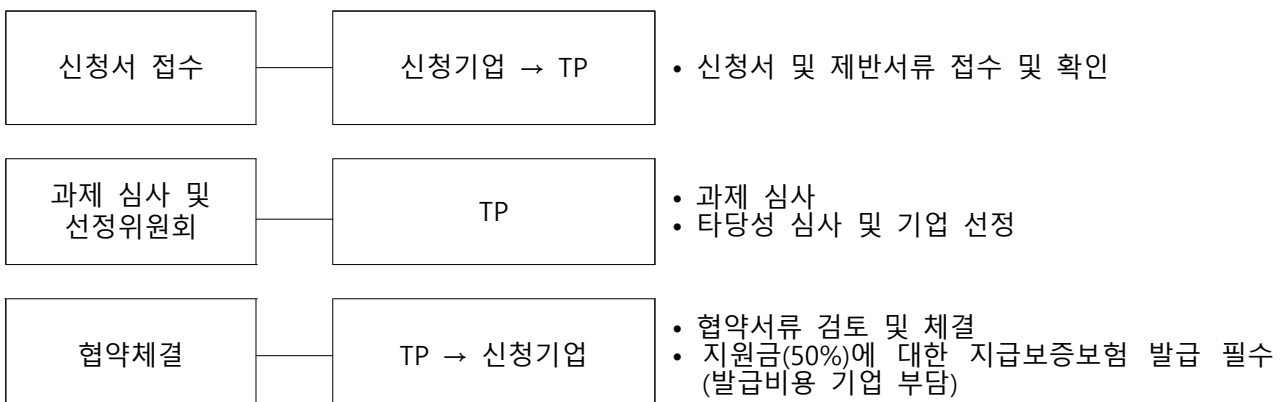
** 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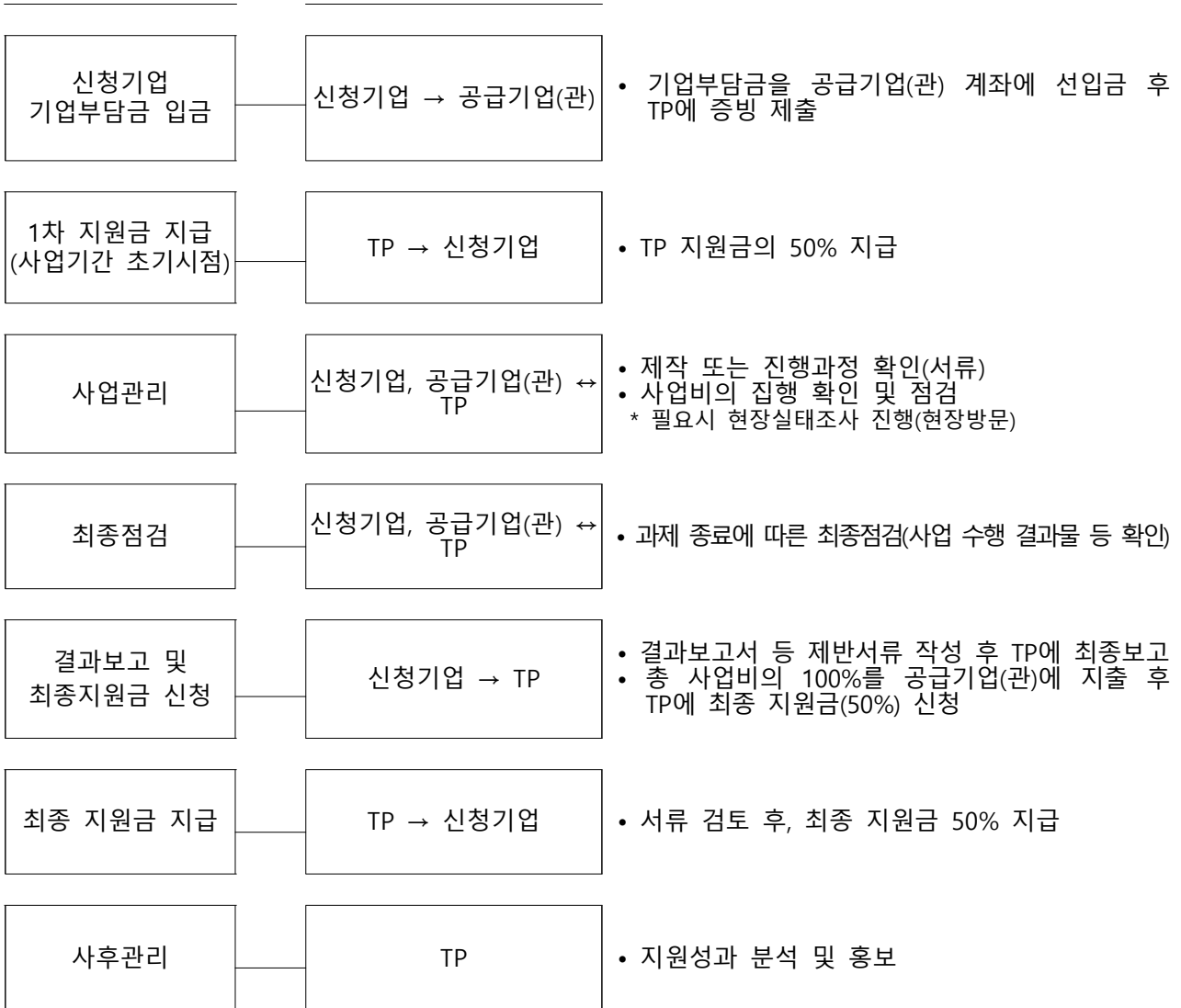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종합 평균점수 70점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지원
- ※ 지원기업 수 및 신청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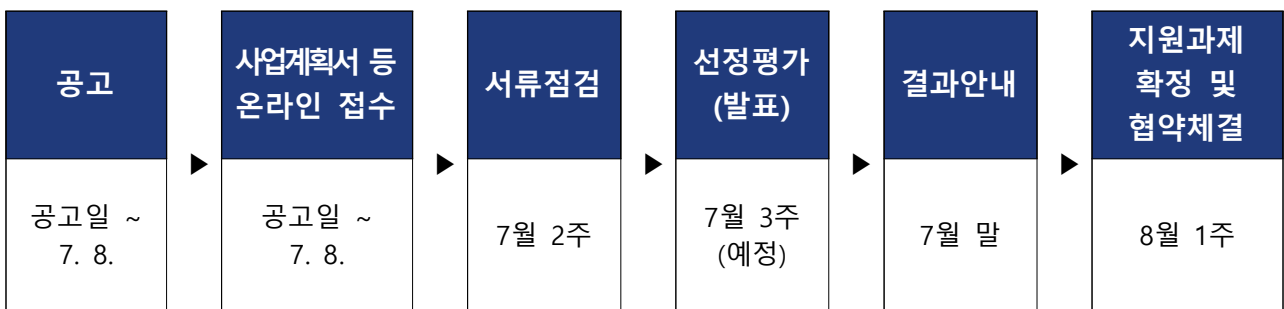
평가지표	세부내용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30)	■ 대상기업의 적격 및 지원 필요성
	■ 애로요인 해결 및 실행 가능성
	■ 사업목적 대비 지원항목의 적정성(필수+자율프로그램 구성)
기술성 (30)	■ 기업 기존 기술보유 및 개발 실적 등 기술 역량
	■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사업목표 및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성 (30)	■ 시장규모 및 목표시장의 타당성
	■ 시장 진출 전략의 구체성/명확성
	■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정도
성장가능성 (10)	■ 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 및 고용증대 가능성
	■ 보유기술 및 이전기술의 활용성

4. 지원절차





5. 추진일정(안)



- * 상기 일정은 TP 및 신청기업/공급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대상 기업에 사전 공지 예정임.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NO.	제출서류	참고사항
1	수요기술조사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직인포함 스캔본 및 한글파일 작성본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관) 각 1부
3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2023, 2024년분) * 업력 1년 미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신청기업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minwon.go.kr) 발급 가능	- 신청기업 1부
5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붙임3]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붙임4] 공급기업(관) 참여확약서[붙임5]	- 직인본 필수, 신청기업 1부
		- 직인본 필수,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관) 각 1부
		- 직인본 필수, 공급기업(관) 1부
6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완료의 경우 : 기술이전 증빙 서류(계약서 사본 등)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정인 경우 : [붙임6] 기술이전 이행확약서	- 기술이전 중개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7	견적서	- 견적서 상 총 합계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며, 산출내역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 - 견적서에 서비스 내용 상세 기술 필요 - 공급기업(관) 이외 타 기업(관) 견적 1부 필수
8	[선택] 평가 및 과제 관련 추가서류	신청 과제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 추가 제출 가능

* 신청기업, 공급기업(관)에 해당되는 서류 잘 확인하여 제출

7.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7. 8.(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http://rnd.jbtp.or.kr)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 사업접수 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폴더 안에 “6.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번호 순으로 나열하여, 폴더를 “*.zip” 파일로 변환 후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양식) 및 구비서류 1식 일체 “*.zip” 파일 제출
(사업 신청서류는 한글파일과 PDF 모두 제출 요망)

제출처 및 문의처

- 담당자 :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송지연 선임연구원
- 주 소 : (5485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4층
- 연락처 : (Tel) 063-219-2163, (E-mail) jysong@jbtp.or.kr

8. 지원제외 기준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협약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서 기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타 사업, 타 기관에서 동일한 기술과 동일분야를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단,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9.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부턴향후 5년간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TP에서 지원된 지원금은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수행 결과물 확인 등의 과정에서 사업수행 결과물 미흡, 목표치 미달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전북지역 소재 여부 판단 : 기업의 본사, 사업장(공장, 지점),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관련지역 내에 있는 경우 소재한 것으로 판단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결과보고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사업비 환수
- 일부의 품목은 신청기업이 사업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업(관)에 맡기는 형태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감사팀(063-219-2350) 또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참고. 정부공인 기술가치평가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http://www.innobiz.or.kr	031-628-9600
2	(주)나이스디앤비	http://www.nicednb.com	02-2122-1340
3	(주)다래전략사업화센터	http://www.daraebiz.com	02-3475-7880
4	(주)에스와이피	http://www.sypip.com	02-563-9607
5	(주)웍스	http://www.wipscorp.com	02-3153-7928
6	(주)이크레더블	http://www.ecredible.co.kr	02-2101-9243
7	(주)주원아이피	http://jwip.co.kr	02-6953-1716
8	(주)케이티지	http://www.iktg.com	042-335-1946
9	(주)티밸류	http://www.Tvalue.biz	02-523-0810
10	유미특허법인	http://kr.youme.com	02-3458-0716
11	특허법인 다나	http://danapat.com	02-556-5548
12	특허법인 다래	http://www.daraelaw.co.kr	02-3475-7871
13	특허법인 도담	https://www.dodamip.com	031-605-4134
14	한국평가데이터(주)	http://www.kodata.co.kr	02-3215-2384
15	국방기술진흥연구소	http://www.krit.re.kr	055-751-5881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www.kaia.re.kr	031-389-6313
17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1544-1120
18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niceinfo.co.kr	02-2124-6822
19	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	053-430-4371
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www.innopolis.or.kr	042-865-8800
21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055-751-9000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ttps://www.kist.re.kr	02-958-5114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042-869-1004
24	한국기계연구원	https://www.kimm.re.kr	042-868-7114
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http://www.kota.or.kr	063-919-1000
26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02-3459-2800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043-713-8000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02-6609-3000
29	한국산업은행	http://www.kdb.co.kr	1588-1500
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kribb.re.kr	042-860-4114
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041-589-8114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	02-3469-8300
3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http://www.keti.re.kr	031-789-7000
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s://www.etri.re.kr	042-860-6114
3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mst.re.kr	02-3460-4000